

문서번호	생활보장과-107
결재일자	201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자활주거담당	생활보장과장	교육문화복지국장		
심규철	이상월	심진숙	01/05 도일환		
협 조					

2015년 복지도우미, 복지시설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시행계획

2015. 01.

교육문화복지국
생활보장과

2015 복지·복지시설 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시행계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도우미 형태로 동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여 사회복지 업무수행을 보조·지원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I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1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II 사업목적

-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에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활 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자활촉진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
- 구청·동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여 담당 직원의 업무 경감

III 사업개요

- 참여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기간 : 2015 01. 02 ~ 12. 31 (12개월)
- 참여인원 : 52명 (복지도우미 12명, 복지시설도우미 40명)
- 사업예산 : 총471,000천원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 복지도우미 : 166,000천원
 - 복지시설도우미 : 305,000천원

○ 사회보험 관련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 연금(본인희망), 산재, 고용보험(실업급여제외)가입
- 차상위 계층 : 연금, 건강, 산재, 고용보험(실업급여포함)가입

※ 수급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반면 이직 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차상위 계층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며,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임

인건비 지급기준

- 복지도우미 : 36,770원(급여 : 33,770원, 실비 : 3,000원)
- 복지시설도우미 : 33,270원(급여 : 30,270원, 실비 : 3,000원)

2014년 추진실적

○ 예산 집행내역

(단위 : 천원/명)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목표인원	참여인원	비 고
총 계	574,000	552,258	96.2%	54	61	
복 지도 우 미	215,500	209,612	97.2%	19	13	
복 지 시 설 도 우 미	358,500	342,970	95.6%	35	48	

○ 부서 및 기관별 배치내역

(단위 : 명)

구 분	배치부서(기관)	목표인원	참여인원	비 고
총 계	구청·동주민센터 및 6개 기관	54	61	
복지도우미	총 계	19	13	
	구 청	4	2	복지정책과 외 2개부서
	동 주민센터	15	11	성북동 외 7개동
복지시설도우미	총 계	35	48	
	길음종합사회복지관	5	9	
	월곡종합사회복지관	10	10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6	7	
	성북장애인복지관	5	9	
	장위종합사회복지관	6	9	
	정릉종합사회복지관	3	4	

IV

2015년 사업추진 방향

복지도우미

-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복지업무 관련부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 보조지원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 배치
 - 참여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층 참여 불가)
 - '12.7.1 이전 참여자는 차상위자 참여 가능
 - 참여 기간
 - '12.7.1 이후 신규 참여자는 1년(시군구청장 판단 하에 6개월 연장 가능)
 - '12.7.1 이전 참여자는 3년(시군구청장 판단 하에 1년 연장 가능)
- ※ 자활현장 건의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조치계획 통보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313(2013.4.9)]

복지시설도우미

-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외 6개 복지시설의 보조인력으로 자활사업참여자 배치
 - ※ 서울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 2015.01.01.부터 신규 배치하기로함
- 참여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참여 기간
 - '13.1.1 이후 신규 참여자는 1년(시군구청장 판단 하에 6개월 연장 가능)
 - '13.1.1 이전 참여자는 3년(시군구청장 판단 하에 1년 연장 가능)
- 2014년 12월 말 현재 근무자를 계속 배치하고 추가 배치를 원하는 복지시설은 지원 신청을 받아 사업타당성 등의 검토 후 지원

V

세부사업 추진계획

대상자 선정

- 선발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특례수급자 포함) 및 차상위계층
- 신청 및 배치
 - 복지도우미 : 신청자 거주지 동에서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및 추천받아

구에서 선발배치

- 복지시설도우미 : 신청자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신청 → 구에서 상담 후 사회복지시설 위탁의뢰 → 사회복지시설 개별상담 후 참여 여부 통보 → 구에서 참여자 확정 및 배치

※ 구비서류 : 자활근로 참여신청서(붙임#1)

사업실시기간 : 2015. 01. 02 ~ 2015. 12. 31

참여인원

- 복지도우미 : 12명/월
- 복지시설도우미 : 40명/월
- 배치 현황

구 분	배치부서(기관)	배치인원	비 고
총 계	구청-동주민센터 및 7개 기관	52	
복지도우미	총 계	12	
	구 청	3	생활보장과 외 2개부서
	동 주민센터	9	성북동 외7개동
복지시설도우미	총 계	40	-
	길음종합사회복지관	4	
	월곡종합사회복지관	10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6	
	성북장애인복지관	4	
	장위종합사회복지관	8	
	정릉종합사회복지관	4	
	서울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4	

※ 복지도우미 신규 참여 자격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선발이 어려울 경우 복지시설도우미를 추가로 선발하고자 함

대상사업

- 복지도우미 :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복지관련 부서의 사회복지업무를 보조지원 하며, 수급자 가구방문, 각종 후원물품 전달, 전화상담 등
- 복지시설도우미 : 사회복지시설의 보조인력으로 무료급식지원, 자가복지 업무지원, 시설관리, 도시락배달 등

□ 급여지급 방법

○ 급여기준(8시간/일)

- 복지도우미 : 36,770원(급여 : 33,770원, 실비 : 3,000원)
- 복지시설도우미 : 33,180원(급여 : 30,270원, 실비 : 3,000원)

○ 정상근무 시간의 조정

- 근무시간 : 09:00 ~ 18:00(8시간), 12:00 ~ 13:00(중식 및 휴식)
- 사업장 여건에 따라 탄력근무가 필요한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조정가능
예) 출근시간을 07시로 조정
- 사업특성상 야간근무(새벽 및 심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야간 근무시간의 3.5시간을 주간근무 5시간에 준하여 처리가능
※ 야간 근무시간 : 20:00 ~ 07:00

○ 급여지급방법 : 해당 월 사업종료 후 익월 5일 전까지 개인별 계좌지급 원칙

- ※ 금융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참여자 요청 시 가족계좌 입금가능

○ 주차, 월차수당 지급

□ 참여자 관리

○ 동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현장지도 책임자를 임명하여 근로인원을 점검하고, 작업량을 부여하는 등 사업개시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 까지 일관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

○ 참여자 출퇴근 및 근무실태는 배치부서에서 기록관리하며, 무단결근 등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을 경우 참여자 선발 및 배치를 취소할 수 있음

- ※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과 생계급여중지 해당여부 등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안내 지침을 적용

○ 개인정보 또는 업무상 습득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배치부서에서 철저한 사전교육과 주기적인 반복 교육을 실시하며 보안 서약서(붙임#2)를 징구하여 제출

○ 자활사업실시기관(동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시설)은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 급여, 근로시간,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사항 등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며,
- 특히, 급여에 관한 사항(일당, 급여의 계산 및 지급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사업투입 전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해부족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예방
- 사업 참여자의 연령, 사업장별 위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

□ 감독 및 보고

- 자활사업참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활사업 참여를 중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통보
- 자활근로사업에 관한 사건, 사고 발생시 즉시 보고
(안전사고, 보도기관취재, 기타 중요한 민원 등)

VI 행정사항

- 2015년 자활근로사업 참여신청서 제출(붙임#1) : '15. 01. 09. 까지
- 보안서약서(붙임#2) : '15. 01. 09. 까지
- 자활근로사업 근무상황부(사본) 및 참여결과 제출 : 매월 25일한
- 자활근로사업 관계공부 작성비치(붙임참조)
 - 작업일지, 근무상황부

- 붙임 1. 자활근로사업 참여신청서(공통) 1부.
2. 보안서약서(공통) 1부.
3.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작업일지 1부.
4.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근무상황부 1부.
5. 「복지시설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작업일지 1부.
6. 「복지시설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참가결과 통보서 1부.
7. 「복지시설도우미」 자활근로사업 근무상황부 1부.
8. 「복지시설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위탁결과 통보서 1부. 끝.